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지정기간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박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5층	2022.7.11. ~2027.7.10. (5년)